



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Partner's Day

2020년 비대면(Untact) 협력사 간담회

2020. 07. 13

Contents

I. SFA 업무개선 사항

1. 외주 협력회사 등록기준 개선
2. 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조치사항

II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

예방 매뉴얼

III.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: 별첨



외주 협력회사 등록기준 개선

에스에프에이는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자, 협력회사의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“외주 협력회사 등록기준 및 비관리 등급(일회성) 업체의 관리”를 개선하였습니다.

1. 신규 외주 협력회사 등록기준 개선

- 모든 신규등록 대상 외주 협력회사는 『**신용평가보고서 제출**』을 필수 조건으로 함.
- 신용평가보고서 미 제출 업체의 등록 의뢰 시, 해당 의뢰부서 담당임원 재가 必.

※ '평가의 일관성' 및 '에스에프에이 구매포탈시스템과의 평가정보 연동'을 고려하여 '이크레더블 社 지정.

(최초 등록 시 他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경우, 다음 해 갱신 시 이크레더블 신용평가보고서 제출 必)

2. 비 관리 등급(일회성) 업체 관리 개선

- 신용평가보고서 미 제출 '**비 관리 등급 업체**' 의 경우 '**거래 유효기간**' 을 1년으로 함.

※ 거래 유효기간 연장 필요 시, 해당 의뢰부서 담당임원 재가 必.

3. 등록등급 구분

일반등급 협력회사	비 관리 등급 업체
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신용등급 B 이상, 현금흐름등급 C+ 이상 ② 설립일 기준 2년 이상 사업영위 ③ SFA 심화실사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④ 개인사업자로 기 등록된 일반등급 협력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(단,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서 새로이 접수)	①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미 제출 업체 (이크레더블 社) ② 설립일 이후 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③ SFA 심화실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④ 한시적 거래가 필요한 업체 ※ 고객사 지정, 전문특화품목(특허 등의 보유)업체, 재무구조 불안정 업체



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등급별 조치사항

해외현장에서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단 한건의 경미한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규정을 강화 시행하여 무재해 준공을 이루고자 함.

■ SKI 헝가리, 미국, 중국(허주, 옌성) 우선적으로 시행

월간 합산점수(사고 + 안전위규)에 따른 벌칙

월간 합산점수	Penalty 조치사항	비 고
200점 이상	(1) 사업운영부문장 명의 경고장 발부 (2) 발주(거래)제한 조치	(1) 재해 3등급 이상 (2) 안전위규 합산 200점 이상 등
150점 이상	사업운영부문장 명의 경고장 발부	(1) 재해 4등급 이상 (2) 안전위규 합산 150점 이상 등
100점 이상	사업부장 명의 경고장 발부	(1) 재해 5등급 이상 (2) 안전위규 합산 100점 이상 등

발주제한조치 기준

단계	월간 합산점수 (안전위규 + 재해등급)	발주제한	비 고
1	200점 이상 ~ 300점 미만	1개월 이상	- 발주제한 최대 1년 - 안전 심의위원회 의결 [환경안전 / PM부서 / 구매그룹]
2	300점 이상 ~ 400점 미만	2개월 이상	
3	400점 이상 ~ 500점 미만	3개월 이상	
4	500점 이상	6개월 이상	

※ 월간 합산점수의 안전위규건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(30일) 이전에 발생한 Data로 산정한다.



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등급별 조치사항

1. 안전사고 발생 시 벌점기준 (1등급 ~ 6등급 / 50점 ~ 500점)

재해구분	휴업일수 (1인 기준)	벌점기준
재해 1등급	법적 중대재해 기준[산업안전보건법 상] 사망재해, 12주 이상(동시2인), 10명이상 질병 시	500점
재해 2등급	12주 이상 휴업재해	300점
재해 3등급	6주 이상 ~ 12주 미만 휴업재해	200점
재해 4등급	4주 이상 ~ 6주 미만 휴업재해	150점
재해 5등급	3일 이상 ~ 4주 미만 휴업재해	100점
재해 6등급	3일 미만 휴업재해	50점

휴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(통원일수는 제외)

재해 예외기준

- ①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
-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
- ③ 개인 질병에 의한 사고
- ④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재해

개인벌점과 협력사 벌점으로 양벌 부과됨.

집계방식: 월별 / 현장별 실시

2. 안전위규 발생 시 벌점기준

- (1) S 등급 : 현장 영구 퇴출 (벌점 25점)
- (2) A 등급 : 현장 5일 퇴출 (벌점 15점 - 동일인 2회 적발 시, 영구 퇴출)
- (3) B 등급 : 현장 1일 퇴출 (벌점 10점 - 동일인 2회 적발 시, 퇴출)
- (4) C 등급 : 작업장 퇴출 (벌점 5점, 교육 후 작업재개 - 동일인 2회 적발 시, 1일 퇴출 / 3회 적발 시, 5일 퇴출)



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등급별 조치사항

3. 등급 및 유형

순번	등급	유형	조치사항
1	S	중량물 취급 안전수칙 위반 [전도/낙하/협착/충돌]	현장 영구퇴출
2	S	턴온 설비 내부 작업 안전수칙 위반	
3	S	상하부 동시작업 실시 [추락/낙하]	
4	S	안전관리자[담당자 등] 폭언, 폭행 / 작업중지명령 불응 등	
5	S	사고은폐	
6	A	안전고리 체결 불량	현장 5일 퇴출
7	A	추락 방지조치 불량	
8	A	안전난간 설치 불량	
9	A	개구부 관리 미흡	
10	A	고 위험작업 관리감독자 미 배치 [고소, 화기, 중량물 등]	
11	A	낙하 위험 자재 방지	
12	A	감전 위험 방지	
13	A	불안전한 상태 방치	
14	A	중량물 및 기계 설비 하부 작업 시 협착 방지조치 불이행	
15	A	불안전한 행동	
16	A	음주 및 지정구역 외 흡연	
17	A	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	
18	A	미 승인 고 위험 작업	



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등급별 조치사항

3. 등급 및 유형

순번	등급	유형	조치사항
19	B	보호구 착용기준 위반 [안전대 제외]	현장 1일 퇴출
20	B	차량계 하역운반, 건설기계 안전수칙 위반	
21	B	화기 작업 시 소화기 미비치	
22	B	렌탈 안전수칙 위반	
23	B	유해화학물질 사용위반	
24	B	적정 작업발판 미사용	
25	B	가설전선 접지불량	
26	B	사다리 안전수칙 미준수	
27	B	신호수 미배치	
28	B	공도구 미인증 및 관리 미흡	
29	C	작업구역 구획 미실시	작업중지
30	C	자재 보관상태 불량	
31	C	정리정돈 상태 불량	
32	C	조도 미확보	
33	C	설비내부 안전수칙 위반 [툰온 전]	
34	C	분전함 및 판넬 관리 미흡	
35	C	고소작업대, 지게차 키, 일일점검체크 등 관리상태 불량	
36	C	작업허가서 관리 & 체크 미흡	
37	C	기타 안전에 위배되는 사항	

- (1) 현장별로 안전위규 기준을 준수하되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상회하여 운영 가능함.
- (2) 안전위규 즉시 작업중지 후 위규장 발주 (위규건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즉시 이의 신청)
- (3) 안전위규 발생에 따른 협력사 벌칙 (합동점검 참석 / 안전캠페인 참석 / 위규내용 발표 등) 은 세부지침으로 별도 현장별 배포.



해외현장 안전위규 등급 제정 및 등급별 조치사항

4. 안전위규 벌점부과에 따른 관리사항

- 벌점부과 현장소장은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서 징구
- 위규 근로자 안전캠페인 실시
 - 퇴출 뒤 업무 복귀 시 퇴출기간만큼 아침 캠페인 실시
 - 조회 전 피켓이나 띠를 두르고 안전의식 향상
 - 위규근로자 및 해당업체 책임자 같이 시행
- 주간 벌점제 누계 Worst 3개 업체 현장 합동안전점검 실시
 - 주간 벌점누계 최고 3개 업체는 차주 수요일 SFA 현장소장 주관 현장 합동점검 동참
 -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
- 주간 벌점제 누계 Worst 1개 업체는 차주 SFA 현장소장 주관 안전회의 시 대책 발표
- 월간 벌점제 누계 Worst 1개 업체는 업체 대표의 재발방지 대책서 및 자필 안전 각서 징구

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COVID-19) 예방 매뉴얼

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

'근로자'는 어떻게?

-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
-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 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
-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또는 실외에서 2m 거리유지불가할 때 마스크 착용
-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

궁금해요!

Q.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자로 통보받지 않았으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

- ①재택근무, ②휴업, ③병가, ④연차휴가 등 다양한 방법 활용

Check 이렇게 적용하세요!

- ✓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 활용
- ✓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
 - ▶ 대면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
- ✓ 개인 찻잔, 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
- ✓ 손이 자주 닿는 곳(탁자, 키보드, 마우스, 전화기 등) 주기적으로 소독
- ✓ 사무실, 작업장 등을 환기
- ✓ 소규모 모임, 동아리 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
- ✓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
- ✓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

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COVID-19) 예방 매뉴얼

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

'사업주'는 어떻게?

-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
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
-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
-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되, 대면 시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, 소독용품 비치
-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
-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열어두고,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
궁금해요!

Q. 재택근무/유연근무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A. (사내규정 없는 경우)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합니다.
정부는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Check 이렇게 적용하세요!

- ✓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
- ✓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, 병가, 연차휴가, 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(▶ 필요 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)
- ✓ 모니터, 책상,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이상 유지
- ✓ 침방울이 튀는 행위 (단체구호, 구호외치기 등) 유도하지 않기
- ✓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,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
- ✓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, 비치하거나 구입 지원
- ✓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
- ✓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마련

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COVID-19) 예방 매뉴얼

회의 시 생활 속 거리 두기

'회의할 때'는 어떻게?

- 가급적 영상회의, 전화회의 등을 활용
- 영상회의,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 개선
-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힐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으로 사용
-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시간 단축

궁금해요!

Q. 회의 중 마스크 꼭 써야 하나요?

A. 2m 거리유지,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선택에 의해 착용하시면 됩니다.

Check 이렇게 적용하세요!

- ✓ 사전에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
- ✓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
- ✓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,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
- ✓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, 회의 시작 전에 환기
- ✓ 회의가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 가지기
- ✓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,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
 - ▶ 간격 준수나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

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COVID-19) 예방 매뉴얼

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

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과 4가지 보조수칙 (마스크, 환경소독, 고위험군, 건강생활)으로 구성



제1수칙

아프면
3~4일
집에서
머물기



제2수칙

사람과
사람 사이,
두팔 간격
건강거리
두기



제3수칙

30초
손 씻기,
기침은
옷소매



제4수칙

매일
2번 이상
환기,
주기적
소독



제5수칙

거리는
멀어져도
마음은
가까이

집단방역 5대 핵심 수칙

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 및
일할 때 지켜야 할 지침 (사업장 및 회의)으로 구성



제1수칙

공동체가
함께
노력하기



제2수칙

공동체 내
방역
관리자
지정하기



제3수칙

공동체
방역지침
만들고
준수하기



제4수칙

방역
관리자는
적극적
으로
역할수행



제5수칙

공동체의
책임자와
구성원은
방역관리
자에게
적극
현조하기

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
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.

